

대구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나3204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8나320458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11. 21 선고 2017가단35171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재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변론 종결2019. 7. 10.

판결 선고2020. 1. 22.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11. 21. 선고 2017가단35171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6,9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3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2019. 5. 31.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다만 청구취지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자부품 임가공업을 하는 원고(상호: C)는 2011. 4. 1. 피고와 사이에 전자회로 기판에 본드를 도포한 후 그 위에 반도체 칩 등을 부착하는 SMD 공정(이하 '이 사건 임가공작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생산에 필요한 재료 및 부품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원고는 지급된 재료를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조 임가공

임가공이라 함은 피고가 원고에게 생산에 필요한 재료 및 부품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의

주문대로 하자 없는 제품으로 성실히 가공하여 피고의 요구대로 생산 전량을 피고가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원고의 책임하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계약의 내용

3) 원고가 피고의 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부자재 및 부품은 피고의 시방서에 의거 소요량 일체를 피고가 원고에게 사급하고 원고는 사급된 재료를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한다.

나. 원고는 2011. 4. 6.부터 2017. 4. 13.까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본드를 구입하여 이 사건 임가공작업에 사용한 후, 위와 같이 임가공작업을 마친 반제품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원고가 2011. 4. 6.부터 2017. 4. 13.까지 임가공작업에 필요한 본드를 구입하여 사용하여 왔고, 그 구입대금은 84,364,000원에 이른다.

다. 한편 원·피고는 공급 물량 등의 협의가 무산되어 2017. 4. 25.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 사건 임가공작업을 위하여 원고가 구입하여 사용한 본드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주장(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부자재인 본드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가공작업에 필요한 본드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본드 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부자재인 본드를 직접 구입하여 이 사건 임가공작업을 마쳤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임가공작업을 마친 반제품을 납품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본드 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본드 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2조는 '임가공이라 함은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생산에 필요한 재료 및 부품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을(원고)"은 "갑(피고)"의 주문대로 하자 없는 제품으로 성실히 가공하여 "갑(피고)"의 요구대로 생산 전량을 "갑(피고)"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을(원고)"의 책임하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3항은 '"을(원고)"이 "갑(피고)"의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부자재 및 부품은 "갑(피고)"의 시방서에 의거 소요량 일체를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사급하고 "을(원고)"은 사급된 재료를 가공하여 "갑(피고)"에게 납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가공작업을 의뢰하면서 교부한 BOM1)에는 이 사건 임가공작업에 필요한 부자재인 본드의 양, 본드의 규격, 본드 제조업체 등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본드를 공급하지 않아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임가공작업에 필요한 본드를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임가공작업에 필요한 부자재인 본드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원고로 하여금 임가공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본드를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본드 구입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본드를 무상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만료 후 원·피고가 새로이 작성한 거래 기본 계약서(을 제7호증의 1)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부자재를 무상 제공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재계약 체결 이후인 2012. 4. 1. 부터는 원고에 대한 본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거래 기본 계약서, 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거래 기본 계약서에는 '제22조(유효기간)'이 공란이고, '계약 체결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거래 기본 계약서가 이 사건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원·피고 사이의 임가공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새로이 작성되었다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18조에는 '본 계약은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다만,

"갑(피고)"과 "을(원고)"은 협의하여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시부터 2017. 4. 25. 임가공 거래 종료 합의 시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임가공 단가에 따라 계속 거래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부자재를 무상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계약서상 유효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거래 기본 계약서 등은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등 다른 목적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갑 제8호증이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점 및 계속된 거래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고, 을 제7호증의 1 기재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2011. 4. 6.부터 2017. 4. 13.까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구입한 본드 대금 상당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구입한 본드가 전부 이 사건 임가공작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피고에게 그 본드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2018. 9. 28.자 구미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D 주식회사, E 등과의 임가공 거래에는 부자재로 납(CREAM SOLDER)을 사용한 점,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전체 매출액 중 피고와의 임가공 거래로 인한 매출액이 약 94% 정도이고 나머지 업체와의 임가공 거래로 인한 매출액은 미미한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구입한 본드는 모두 이 사건 임가공작업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본드 대금 채권은 ①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채권'이거나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거나,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일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민법 제163조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제3호)',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제7호)'등을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 주장 채권은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므로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 같은 조 제7호의 수공업자나 제조자는 소규모로 영업하는 자를 말하고 근대적 기계설비를 갖추고 대규모로 영업하는 원고와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7호도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 채권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상법 제64조),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7. 8. 선고 97다9260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6223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등 참조).

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가공작업에 필요한 부자재인 본드 제공을 요청할 채권은 상인간 거래로 인한 채권으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피고의 본드 제공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본드 대금 상당 손해배상채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며, 그 소멸시효는 적어도 피고의 본드제공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본드를 구입하여 피고를 상대로 본드 대금 상당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었던 원고의 각 본드 대금 지출 시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11. 4. 6.부터 2017. 4. 13.까지 이 사건 임가공작업을 위하여 84,364,000원 상당의 본드를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2017. 11. 23.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의하면 2011. 4. 6.부터 2012. 11. 22.까지 지출된 본드대금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7. 11. 23.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012. 11. 23.부터 2017. 4. 13.까지 지출된 본드대금(이하 '나머지 본드대금'이라 한다)은 각 지출일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 시(2017. 11. 23.)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

구체적인 원고의 나머지 본드대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23.부터 2017. 4. 13.까지 지출한 본드대금은 총 66,987,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본드 제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본드대금 합계 66,9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각 본드대금 지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해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 주장의 선택적 청구 중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이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채권의 발생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등 참조)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정인섭

판사최미복

판사이준규